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6. 25.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9년 6월 5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19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위원회(2019. 6.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정국장 김정수)

가. 제안이유

-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이 개정(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위임 법조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존 일몰기한 삭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법 조항 변경(안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경태)

-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종교단체 의료업 재산세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법령에서 위임한 경감 범위 내인 100분의 50으로 경감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음.
- 검토결과,
 - 관련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위임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칙 적용례 규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소급 적용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경우 국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사항이 아닌 수익적 처분을 위한 개정이므로 소급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이나, 다만,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조례 개정 시에는 행정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는 등의 시기적절한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13 호
----------	---------

제출연월일: 2019.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조례로 위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38조제4항이 개정(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위임 범조항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기존 일몰기한 삭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위임범 조항 변경(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9. 4. 4. ~ 4. 24./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75로 하고,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2조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